

제415회 임시회  
'24. 3. 14.(목)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정일 의원 등 7인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4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6일

## 3. 제안사유

-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목적규정에서 불필요한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안 제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근거 및 내용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
- 상위법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추가(안 제6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 5. 검토의견

### 가. 제출배경

- 우리나라의 연간 학업중단 학생은 약 5만명, 2022년말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약 17만명으로 추정<sup>1)</sup>되며, 도내 학업 중단 청소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연간 약 4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업 지속(검정고시, 진학 준비, 복교 등), 취업·진로설계(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진로를 탐색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 본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충청북도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조례에 해당하므로 목적에서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타당함.
-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청소년기본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

1)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교육부, 2022.11.28.)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현행 조례는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의 수립 주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상위법에 따른 시행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일원화 하는 것은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6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업무추진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 종합 검토의견

-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문제아로 치부하는 사회적 편견이 있음.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를 떠나는 순간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누리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계획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함.